

의안 번호	2192	【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3. 11. 9.(목)
- 제출자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3. 11. 9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3. 12. 4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코자
- 『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 대상시설 :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
- 2) 위탁사무의 내용
 -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
 - 육아종합지원센터 클로버부모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3)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·결정
- 4) 위탁기간 : 2024. 4. 1. ~ 2027. 3. 31.(3년)

다. 근거법규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 2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59조의3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1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위탁체에게 본 사업을 민간 위탁 하고자 제출한 동의안 임.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2.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
3.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
4.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
5.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
2.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

제39조의3(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대표자의 경력사항
4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5. 법인·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6. 법인·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
7.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(예산서를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<2012. 8. 17.>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을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수탁기관은 법인·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,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변경 사유서
2. 대표자 경력사항(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정관·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5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

제17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 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